







보도자료

- 미래창조 금융
- •따뜻한 금융
- 튼튼한 금융

배포시부터 보도 가능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, 자산운용과, 공정시장과		
책 임 자	이형주 과장 안창국 과장	담 당 자	김성준 사무관 (02-2156-9876) 송병관 사무관 (02-2156-9891) 이동욱 사무관 (02-2156-9912)
배 포 일	2016.1.20(수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15매

제 목 : 금융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 추진

- ① 글로벌 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능 강화
- ❷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, 사모시장 활성화 등 시장 활력 제고 기반 마련
- ❸ 정보교류차단장치 완화, 복합점포를 통한 공동영업에 대한 수수료 자율화 등 규제개혁을 통한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자율성 제고

1 추진 배경

- □ 2015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「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」, 「ETF 시장 발전방안」, 「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」등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발표
- 또한 **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** 및 **다수의 현장건의**를 통해 기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발굴
- □ 금번 개정은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
- 「**자본시장법 시행령**」(이하 시행령)과 「**금융투자업 규정**」(금투업규정), 「**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**」(증발공규정)의 개정을 동시 추진
-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**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**를 가져올 수 있도록 **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**해 나갈 계획
- □ 아울러 입법예고기간 중 수렴되는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정책수요자와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이번 개정이 금융개혁의 果實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할 예정

2 이미 발표된 주요정책의 후속조치를 위한 개정사항

[1]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능 강화 (「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」(15.10.14) 후속조치) [시행령 안 제50조제1항제3호, 제77조의5 / 금투업규정 안 제4-102조의4]

개정취지

- □ 실물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
- □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규모와 자본력에 걸맞는 **차별화된 경쟁력을** 확보할 수 있도록 **내부주문집행 등 신규업무를 추가**

- □ (i)지급보증, (ii)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*는 신용공여 한도(자기자본의 100%) 산정시 제외
 - * (예시) PF자문, 주선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PF대출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사모 증권의 주선업무를 수행하면서 사모증권의 매수대금을 공급하는 경우 등
- 레버리지 규제의 도입으로 신용공여 총량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증권사와의 규제차익을 해소^{*}하는 방향으로 신용공여에 대한 한도규제를 완화
- * 일반증권사의 경우 지급보증이나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에 한도규제가 없음
- 지급보증에 대한 **경직적인 한도규제는 폐지**하되, 지급보증 등 증권사 우발채무 유발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**상반기 중** 우발채무 유발거래에 대한 중합적인 건전성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
- □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용한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(최소 호가 규모 1억원이상) 매칭서비스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 업무로 추가
 - * (예시)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수의 연기금,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상장주식에 대한 대량 매수·매도 주문을 접수하고, 이를 거래소에서 형성된 시가의 가중평균가격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시간마다 일괄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
- 장외 대량매매시장 개설 허용을 위해 **자기계약금지**(시행령 안 제66조), 무허가 시장개설행위금지(시행령 안 제354조의2) 규제에 대한 예외 신설

(2)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 및 사모시장 활성화

(「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」('15.10.14) 후속조치)

[시행령 안 제10조, 제11조 / 금투업규정 제3-14조·제3-17조·제3-22조, 증발공규정 제2-2조제2항제4호]

개정취지

- □ 전문투자자의 **요건이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**하여 전문성 있는 **투자자들이 투자에 불편함**을 겪고, 금융투자업자들은 판매규제에 대한 부담으로 혁신적 상품개발에 소극적
 - 또한 사모시장이 **공모시장을 보완하는 자금조달 기능**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여 다양한 기업 자금조달 수단이 확보되지 못함
- □ 전문투자자 범위를 확대하고, 공모규제를 정비하는 한편, 적격기관 투자자 대상증권(QIB증권)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전문투자자 중심 사모시장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

주요내용

- ① 개인과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에 대한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하고, 개별법상 집합투자기구들을 전문투자자 범위에 추가
 - * 개인 : 금융투자상품 50억 → 금융투자상품 5억, 연소득 1억 또는 총자산 10억이상 외감대상법인 : 금융투자상품 100억 → 금융투자상품 50억
- ② 공·사모 판단시 모든 전문투자자를 청약권유 합산 대상에서 제외
 - * 50인 이상의 일반투자자 등에 대해 청약권유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모로 판단
 - * 현재 전문투자자 중 주권상장법인, 개인, 일반법인, 지방자치단체, 외국인, 외국법인 등은 공모 판단시에는 일반투자자로 취급하여 청약권유 대상자 50인 산출 대상에 포함
- ③ 적격기관투자자(QIB) 전용 사모채권에 대한 규제 완화
 -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QIB전용 사모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
 - * 금융회사, 공기업, 상장법인 등도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인 경우 QIB시장 이용가능. 다만 상장증권과 동일종목의 증권은 발행할 수 없음
- **외국기업**의 경우 **자산규모 제한 없이** QIB전용 사모채권 발행을 허용하여 **위안화 채권** 등 **외화증권의 국내발행 인프라**로 활용

- 거래플랫폼 규제를 폐지하여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고, <u>주권상장</u> 법인, 저축은행, 저축은행중앙회, 산림조합중앙회, 새마을금고연합회, 신협중앙회 등의 전문투자자를 적격기관투자자에 추가
- <u>다수의 적격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되어 증권에 해당하는</u> QIB전용 사모채권^{*}에 대해서는 NCR규제 부담을 완화^{**}
- * (요건) 발행정보 게시, 신용등급 산출, 다수기관투자자에게 청약기회 제공
- ** (혜택) NCR 규제상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 →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위험액 산정
- (3) 정보교류차단장치 완화 (「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」('15.10.14) 후속조치) (시행령 안 제50조, 제51조, 제272조 / 금투업규정 안 제4-6조)

개정취지

지나치게 경직적인 정보교류차단장치 규제가 **업무영역간 협력과 시너지 창출에 장애**가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**이해상충** 가능성을 차단하는 범위안에서 **합리적인 규제 완화방안**을 마련

- □ 기업금융업무와 타 업무영역간 시너지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
- ① 일정요건^{*}을 충족하는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**출자 또는 운용업무**에 관한 **정보교류차단장치를 해제** (※ 집합투자업부서 또는 기업금융부서에서 영위 가능)
 - * (1) PF 자문, 주선 업무와 연계하여 해당사업에 재산의 90%이상을 운용하는 펀드,
 - (2) 재산의 90% 이상을 기업 대출채권 매입 또는 그러한 방식으로 재산을 운용하는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출자로 운용하는 펀드
- ② 기업금융부서가 기업 자금 공급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중권 등의 자산을 처분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(※ 고유재산운용부서 또는 기업금융부서에서 영위 가능)
 - * (예시) 기업금융부서에서 취득한 코넥스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처분업무를 기업금융부서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화
 - 아울러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업무, 위험관리 목적의 파생상품거래 업무를 기업금융부서에 허용
- * 同 업무들을 비상장기업에 대해 영위하는 것은 旣 허용 → 범위를 코넥스 상장기업까지 확대 |

- ③ 전자단기사채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·주선·대리업무를 기업금융부서에서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(※ 채권매매·중개부서 또는 기업금융부서에서 영위 가능)
- * 현재 국채, 지방채, 특수채, QIB채권, CP 등을 기업금융부서에서 취급할 수 있음
- ④ 기업금융부서가 편드의 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자문, 주선, 실사 등을 직접 담당한 부동산펀드·특별자산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업무 까지 담당 할 수 있도록 허용

(※ 고유재산운용부서 또는 기업금융부서에서 영위 가능)

- * 타인의 자문 등에 따른 단순 투자업무는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 담당
- □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전담중개업무부서가 전문투자자 대상 증권 대차 업무와 공매도 주문 수탁업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
- □ 자산운용사의 **창의적 업무수행을 지원**할 수 있도록 **집합투자업 관련 정보교류차단장치 정비**
- ① 기업금융업무 중 SOC 등 실물에 투자하는 PEF 운용업무와 여타 퍽드 운용업무 간 정보교류차단장치 폐지
- ② 투자자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펀드 투자 구성내역의 판매사 제공 제한 기간 완화(2개월→1개월)
- ③ <u>자산운용사 임직원의 해외 PEF가 설립한 SPC 임직원</u> 겸직·파견 허용
- ④ <u>겸영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(은행, 보험)의 금융투자업무 영위 직원의</u> 전보제한 규제(1년) 폐지
- [4] ETF 시장 활성화 (「ETF시장 발전방안」(15.10.2) 후속조치) [시행령 안 제80조 / 금투업규정 안 제 4-7조의2. 제4-52조 등]

개정취지

- □ ETF시장 활성화, 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ETF가 자산관리서비스의 핵심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
- 이를 위해 ETF 수요기반 확충, 파생상품 관련 운용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

- □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(i)펀드가 ETF 발행 증권 총수의 50%*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, (ii)펀드가 자산총액의 100%까지 투자할 수 있는 다른 펀드의 범위에 채권형 ETF**를 추가
 - * 현재는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 시 피투자펀드 증권총수의 20%까지 투자 가능
- ** 다만,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채, 통안채 및 정부·지자체 보증채만 편입 ETF로 한정
- ② 손실 금액이 제한되는 등 **일정요건**을 충족하는 ETF에 한해 **파생상품** 위험평가액 한도를 확대(100%→200%)
 - * 손실금액 제한 인정요건 : (i) 레버리지 배율이 2배 이내일 것, (ii) 투자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가격변동폭이 제한될 것, (iii)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
 - * (개정이유)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에 대한 엄격한 한도 제한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한다양한 구조화 ETF 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는 상황(ETF 196종목 중 구조화 ETF는 2종목에 불과) → 손실위험이 제한되는 ETF에 한해 파생상품 편입 한도를 확대
- ③ ETF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하여 기초지수 구성종목수가 200종목 이상인 경우 시가총액 75%에 해당하는 종목 기준으로 최저 규모요건^{*} 판단
 - * (개정이유) 현재는 시가총액 순으로 85%에 해당하는 종목의 3개월 평균 시가총액이 150억원 이상 및 거래대금이 1억원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, 이러한 기준은 종목수가 많은 해외지수 등에 적용하기엔 과중한 규제인 측면
- 4 외국 ETF 등록요건 중 일반상품(commodity) 투자비중 제한 폐지
 - * (개정이유) 현재 집합투자재산의 20% 이내에서만 일반상품 투자를 허용하여 해외 ETF의 국내상장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, 국내 ETF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측면에서도 시정 필요성이 있는 상황
- 5 레버리지 · 인버스 ETF 등 투자위험이 높은 ETF에 대해 적정성 원칙* 적용
 - * 적정성원칙 :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자특성을 파악하고, 해당 상품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주로 파생상품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적용

(5) 신용공여 관련 규제 정비 (「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」(15.10.14) 후속조치) [금투업규정 안 제4-23조, 제4-25조, 제4-28조, 제4-29조]

개정취지

□ 신용공여 업무 관련 불합리한 규제 들을 정비하여 투자자 불편을 해소하고 증권사의 영업자율성을 제고

주요내용

- Ⅱ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의 만기 제한(3개월)을 폐지
- ② 신용공여 한도(자기자본의 100%) 산정시 매도증권담보육자 금액을 제외
 - * (개정이유) 매도증권담보융자는 이미 매매가 체결된 매도증권의 매각 대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,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점을 감안하여 한도 산정시 제외
- ③ 투자자가 추가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담보증권의 범위를 최초담보 범위와 동일하게 자율(negative)화
 - * (개정이유) 신용거래시 최초 담보는 담보증권의 범위가 폭넓게 허용되나, 담보 부족을 이유로 추가 담보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담보증권의 범위가 거래소가 정하는 대용증권에 한정되어 투자유의종목 등의 담보활용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 불편이 커지는 문제 발생
- ④ 투자자의 채무불이행시 담보주식 반대매매 시기를 **투자자와 금융투자** 업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르도록 자율화
 - * (개정이유) 현재는 증시 시가결정을 위한 호가에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어 채권보전을 위해 투자자의 재산을 과다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, 장중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보다 유리한 가격에 담보증권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
- 5 신용거래 계좌에 대한 순재산액 규제(순재산액 100만원 유지)를 폐지
- (6) ELS 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(「피생결합증권 발행현황과 대응방안」(15.8.27) 후속조치) [금투업규정 안 제2-24조]

개정취지

□ 금융투자업자가 파생결합증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**건전하게 관리・ 운영**하도록 유도하여 **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**할 수 있도록 금융
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 추진

주요내용

- □ 파생결합증권(ELS, ELB, DLS 등)에 대한 **내부통제기준 마련시 포함** 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
- ①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그 밖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는 내용
- ②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일반계정에 대여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일정한 경우를 정하여 양 계정간 거래를 제한 하여야 하다는 내용
- ③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투자대상자산의 요건에 관한 내용
- (7) 복합점포에 대한 수수료 자율화 (「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」(15.12.3) 후속조치) [금투업규정 안 제4-20조]

개정취지

- □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에 대해 **투자자의** 매매거래 규모나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· 간접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
- □ 다만 복합점포의 경우
- 업권간 공동영업을 통해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는 이점이 있고,
- 공동영업의 상대방(예: 은행)이 **엄격한 규제·감독**을 받는 금융회사이며,
- 미인가 행위나 불건전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**내부통제기준**과 이해 상충방지장치 등을 통해 추가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,
- **공동 영업의 효율성 제고**를 위해 공동영업의 상대방에 대하여 금융 투자업자의 **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(수수료) 지급을 허용**할 필요

주요내용

□ 금융투자업자와 **물리적 공간을 공유**하면서 **공동영업**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이나 고객의 거래 규모 등에 연동한 대가 지급을 허용 (8) **담보목적 증권대차거래 허용** (「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」(15.10.14) 후속조치) (금투업규정 안 제5-25조)

개정취지

- □ 파생상품거래, 신용융자 등과 관련하여 **증권이 담보목적으로 널리이용**되고 있으나, **재담보** 등 담보 목적 증권의 **재활용이 극히 제한적** 으로 이루어져 **자금중개의 효율성이 저해**
- □ 특히 담보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**질권 설정을 통한 담보관리 관행의 개선 필요성** 제기
- 현재는 담보증권을 **질권 방식으로 관리**하는 것이 일반적이나, **담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** 등의 이유로 재활용에 한계
- 대차거래 형태로 담보를 제공^{*}할 경우 이러한 한계를 해소할 수 있으나, **규정상의 제약**으로 대차거래 형태의 담보제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
- * 유동성이 있는 증권을 보증금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담보로 활용
-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**대차거래를 통한 담보제공을 제약**하는 **제도적 요인을 개선**하는 규정개정 추진

주요내용

- □ 증권 대여시 담보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 마련
 - 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**무조건 담보징구 의무가 발생**함에 따라 **기존** 채**무에 대한 담보제공 목적**의 증권대여가 불가능
 - 이를 감안하여, **담보목적의 증권대여**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한 채무 외에 **별도의 담보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**

3 업계, 금감원의 현장 건의 등 규제 개혁을 위한 개정사항

(9) 공시규제 정비 (현장건의 및 「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」('15.6.1) 후속조치) [시행령 안 제121조 제124조의2, 제171조, 제200조 / 증발공규정 안 제2-4조의2]

개정취지

□ 우량 외국 국채에 대한 매출신고서 면제 등 그간 **지속적으로 제기** 되어 온 규제완화 요청들을 법령에 반영하고, 과중한 공시부담을 합리화 하기 위한 개정 추진

- ① 일정 등급 이상 **우량한 신용등급을 가진 외국정부**가 발행한 증권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를 조건으로 **증권(매출)신고서 제출면제**
 - *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요건 (증발공규정 개정사항)
 - ① 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 등급 이상 받을 것
 - ② 증권에 관한 정보 등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것
 - ③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투자자에게 사전에 설명할 것
- ② 중권신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사항 중 **상호 중복***되거나, **중요성이** 낮은 항목**을 주요사항보고서 공시항목에서 삭제
 - * 주식 및 주식형 사채(조건부자본증권)의 발행 관련 사항
- ** 영업전부 양수의 경우에도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공시 면제
- ③ 집합투자기구의 적극적 투자집행 촉진을 위해 국민연금 등 다른 전문 투자자와 같이 **완화된 소유주식공시 보고기한 적용**
 - * (현행)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\rightarrow (개정)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 까지
- 4 <u>투자위험도가 높은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하여 일괄신고서를 통한 증권</u> 발행이 제한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
 - * 실무상 일괄신고서 제출을 제한하고 있으나, 규정상 가능한 것으로 오인 소지

[10] 인가 및 보고의무 관련 제도 정비 (시행령 안 제371조, 별표2 / 금투업규정 안 제1-6조, 제2-16조, 별표2, 3, 5)

개정취지

□ 현장 건의 등을 통해 확인된 인가, 보고의무 관련 불합리한 규제, 불필요한 절차 들을 폐지하여 현장의 실무상 애로를 해소

주요내용

- ① 과대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**처분청인 금융위에 부과 사실을 다시** 보고해야 하는 불합리한 의무를 폐지
- ② <u>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결격</u> 사유*가 되지 않도록 예외를 신설
 - *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, 금융관련법령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및 「조세범처벌법」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대주주 결격사유가 됨
- ③ 등록을 통해 진입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회사 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하여 지분보유 임원의 주요주주 요건을 지분율 5%이상으로 조정
 - * 투자자문업, 투자일임업, 전문사모집합투자업,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식의 투자중개업 이외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 대해 적용 → 스톡옵션 부여 등이 편리성 제고
 - * 인가를 통해 진입하는 일반적인 금융투자업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1% 유지
- 4 <u>사실상 임원(영 제26조의2에 따라 임원으로 간주되는 자)의 선임 또는 해임시</u> 보고기한을 7일 이내로 명확화
- 5 금융투자업자가 「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, 지점, 사무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른 중복 보고의무를 폐지
- ⑥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위한 구체적인 인력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비명시적 인가지침을 공식화
- 기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에서 국민연금공단을 제외
 - * 현재 예금보험공사, 자산관리공사는 심사대상 대주주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음

[11] 그 밖의 개정 사항

개정취지

□ 반복적인 규제완화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나 애매한 규정상 표현으로 실무상 혼선이 있는 부분들을 정비하여 손톱 밑 규제가시를 제거

- □ 다자간매매체결회사(ATS)의 거래량 제한 완화 (시행령 안 제7조의2)
- ATS의 경쟁매매 거래량 한도를 시장전체 기준 15%, 개별종목 기준 30%까지 상향 조정
- * 현행 시장전체 5%, 개별종목 10%의 3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
- * 「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」('15.7.2)에서 시장전체 10%, 개별종목 20%로 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, 이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 완화 폭을 확대
- <u>아울러 ATS 설립이 가시화되는 경우 매매체결대상상품에 ETF를</u> 추가하는 등 취급상품 확대도 추진할 계획 (시행규칙 개정사항)
- ② 대주주·계열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규제 정비 (시행령 안 제38조)
-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위해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보유할 수 없도록 명확화
- * (개정이유) 현재 법률에서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의 보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(법 제34조제1항제1호), 시행령에서 신용공여적 성격의 증권보유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실무상 혼선이 발생
- <u>금융투자업자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금융</u> <u>투자업자의 직접 대출을 허용</u>
- * (개정이유) 현재는 채무보증만 허용됨에 따라 자체자금의 대여를 통한 자금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도 현지에서 높은 조달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

- ③ 파생상품영업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(금투업규정 안 제2-24조)
- 지점별 영업관리자가 파생상품영업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
- 4 조건부자본증권 위험액 산정방식 명확화 (금투업규정 안 제3-16조, 제3-17조)
- <u>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인이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주식위험액을</u>, 그렇지 않은 경우 금리위험액을 산정하도록 명확화
- 5 증권사 겸영업무 확대 (금투업규정 안 제4-1조)
-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겸영업무에 추가
-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(노란우산공제) 판매대행 업무를 겸영업무에 추가
- 6 설명서 수령거부 방법 확대 (금투업규정 안 제4-20조제1항제9호나목(1))
-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시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의 교부를 투자자가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 방법을 전자우편 등 비대면방식으로 확대
- * 현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만 수령거부
- 조금계정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명확화 (금투업규정 안 제8-43조)
- **종금계정으로 분류되는 채무보증**을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에 포함
- 图 자금중개회사 중개 대상기관 확대 (금투업규정 안 제8-78조)
 - 자금중개회사 중개 대상기관에 **우정사업본부**를 추가
 - 우정사업본부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RP 등 단기자금거래의 거래상대방으로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**단기자금시장의 효율성이 제고**될 것으로 기대

4 기대효과

기업 :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기업활동이 편리해집니다.
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보다 용이 해지고 증권사의 브릿지론 공급능력이 확충되어 PF사업이 편리해집니다 .
□ 적격기관투자자(QIB) 전문시장을 통해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 없이 편리하게 회사채를 발행 하여 자금을 조달 할 수 있게 됩니다.
□ 공시규제 합리화로 기업의 불필요한 공시부담이 경감됩니다.
투자자 : 더 다양한 상품이 제공되고 더 편리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.
□ 다양한 ETF 가 등장하고,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편 드가 활성화되는 등 보다 다양하고 매력적인 상품 을 기반으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.
□ 개인 또는 일반법인인 전문투자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신속하고 편리하게 파생상품 등 여러 가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.
□ 외국국채,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상품 등 상품 선택권이 넓어집니다.
□ 파생결합증권(ELS, ELB, DLS 등)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투명하게 관리 되어 더 안전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.
□ 증권사에서도 선불카드 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.
증권사 : 영업자율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창출됩니다.
□ 저ㅂ교르차다자치 하리하 ㄹ 부피용하 저치의 비용이 주어두고 IR어므의

- ☐ 정보교류차단장치 합리화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줄어들고 IB업무와 타 업무간 시너지가 제고되어 효율적인 기업금융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.
- * (예시) 현재는 기업금융부서에서 PF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금조달용 펀드 설정을 위해 별도의 자산운용사를 선정했으나, 이제 기업금융부서 내부에서 통합 추진 하거나, 증권사 내부의 집합투자업부서와의 자유로운 협업을 통해 추진 가능
- □ **전문투자자 중심시장, 사모시장** 등 새로운 시장이 활성화 되어 금융투자 업자가 **새로운 사업영역을 개**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.
 - * (예시)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다수의 개인, 법인, 외국인을 대상으로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도 공모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,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상품 활성화 가능
- □ 담보증권 재활용, 복합점포 수수료 자율화, 각종 보고 및 인가관련 규제 완화 등 금융투자업 현장의 불편을 가중시켜온 손톱 밑 규제들을 개혁하여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.

5 향후계획

- □ 입법예고, 규정변경예고 : '16.1.20 ~ '16.2.29 (40일간)
 - * 자세한 개정규정(안)의 내용이나 입법예고 관련 행정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(http://www.fsc.go.kr → 지식마당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/규정변경예고)에 게재
- □ 예고기간 종료 후 규제개혁위원회,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**3월말 ~ 4월초순경 개정을 완료**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

[별첨] 신구조문대비표

- 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
- 2. 「금융투자업규정」일부개정규정안
- 3.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규정안

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http://www.fsc.go.kr

